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 참고자료

지역특화특구 지정변경해제 업무 매뉴얼

2025. 5

중소벤처기업부

◇ 본 매뉴얼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하여 ▲특화특구 신규지정, ▲운영 중인 특화특구의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추진하려는 특화사업자(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에서 발췌

◇**용어 정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법'**
위 법 시행령 → **'영'**, 위 법 시행규칙 → **'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 **'규정'**

차 례

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1

Ⅱ.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절차 ····· 2

Ⅲ.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 지정해제 절차 ···· 12

Ⅳ. 지역특화특구 선정 ·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 17

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상황 조사 ····· 21

Ⅵ.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 22

Ⅶ. 참 고

1. 관련 규정(법령 및 고시) ·····23

(1)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부분) ·····23

(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 관리 규정('25.4.25 일부개정) ·····101

2. 지형도면 작성 기준 ·····114

3. 규제특례 활용사례 ·····116

4. 지역특화특구 신규지정 신청서(예시) ····· 345

5.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신청서(예시) ····· 353

6. 지역특화특구 지정해제 신청서(예시) ····· 357

7. 시 · 도별 지역특화특구 지정 현황('25.5월 기준) ····· 360

지역특화특구 업무 매뉴얼 제·개정 내역

시기	쪽번호	개정 전	개정 후	사 유
'23.8월	-	최초 제정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이해도 제고
'25.5월	p.18	-	총사업비 관리 기준 추가	일관된 관리기준 확립
	p.19	-	지역협의회 운영시 이행의무 추가	관련 고시 개정
	p.101~113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개정본 반영	관련 고시 개정
	p.109	-	지형도면 작성 기준 추가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필요
	p.111	-	규제특례 활용사례 추가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이해도 제고

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지역특화특구 지정절차 >

지정 신청·검토	관계행정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특구위원회	특구지정 고시
신청서 검토 (필요시 보완)	규제특례 적용검토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추가 협의	특구지정 심의·의결	특구지정 관보 고시 및 통보
지자체→중기부	중기부↔관련부처	중기부↔관련부처	특구위원회	중기부→지자체 등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 현재 175개 특구*(138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5.5월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28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3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0	6	5	2	3	1	3	20	13	16	16	13	30	21	14	2	175

< 유형별 현황 >

구분	향토자원	문화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특구(개)	87	39	19	24	6	175

II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절차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절차 흐름도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전 (추진주체 : 지자체)

* ( ) : 필요시 거쳐야 하는 절차(필수사항 아님)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구상 또는 제안 * 근거 : 법 제5~6조

1. 지자체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도 가능
2.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자체에 특구계획 제안도 가능(60일 이내 지정 필요성 검토)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근거 : 법 제62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시
*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에 제출하여 승인 필요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 20일 이상) * 근거 : 법 제7조

대상지역 및 면적,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특례 내용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등

⇓

(특화사업자 지정) * 근거 : 법 제8조

1. 공고된 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통보
2. 민자유치 필요성의 인정시 지역특화특구 지정 이후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아 선정 가능(계획변경)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열람(공고 6일 이후 14일 이상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 근거 : 법 제7조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 가능

⇓

주민 공청회(개최 14일 이전에 공고) * 근거 : 법 제7조

계획안 공고기간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근거 : 법 제7조

법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이후가 바람직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특구 계획의 시·도 통보 * 근거 : 법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특화특구계획을 시·도지사에 통보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추진주체 : 중기부)

* ( ) : 필요시 거쳐야 하는 절차(필수사항 아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중기부 ↔ 지자체) * 근거 : 법 제11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정 통보(단, 45일 연장 가능)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가 있을 경우 보완·추가 제출 요청(보완기간 제외)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근거 : 법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에 해당시(중기부 ↔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부 ↔ 관계행정기관) * 근거 : 법 제11조

1.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가능)
2. 기간 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근거 : 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의 법령상 필수포함사항 준수 등 검토(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회 개최(중기부 ↔ 실무위원) * 근거 : 법 제12조

관계행정기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필요시) 및 정리

⇓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중기부 장관) * 근거 : 법 제13조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2. 지자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4. 특화사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지역주민·기업 등의 의견
6.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기타(특구계획 실행가능성,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여부·국내외 수요 전망,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고시 * 근거 : 법 제11조

1. (중기부) 관보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고시(특구계획 승인,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 지정으로 봄)
2. (중기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
3. (시장·군수·구청장) 통지받은 결과를 주민에 열람(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보고(지자체) 및 평가(중기부) * 근거 : 법 제23~24조

1. (지자체→중기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성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31까지 제출
2. (중기부)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특구 선정, 평가결과는 지역특화특구제도 개선에 반영

2. (1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의 수립(법 제 5 · 6 · 9조)

가. 수립주체(법 제5·6조)

○ **(원칙) 통상적**으로 **단일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나, **공동특화특구** 지정 추진시 **복수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가 수립(법 제5조제1·2항)

* 필요시 외부업체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하기도 함

○ **(부가사항) 민간기업 · 법인 · 단체 · 개인**은 지역의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제안 가능**(법 제6조제1항)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시 **계획 제안자**는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지역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답변**하여야 함(영 제4조제1항)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영 제4조제2항)

①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②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의 발생 가능성
③ 재원확보계획
④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법 제9조제1항)

※ 중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 제출 요청 가능(영 제3조)

①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② 특구지정의 필요성
③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④ 특구 토지이용계획
* 특구법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⑤ 특구 적용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세부 자료

⑥ 재원조달방법
⑦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⑧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⑨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⑩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6조)>

①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및 시행기간
②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법 제7조제1~2항)
③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
④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특구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
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법 제62조제1항)

3. (2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컨설팅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화사업 및 특례 적용 등**을 **중기부**와 **협력·상의** 후 추진 필요

*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전(前)

- **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 없이 **단독 추진** → **보완사항** 발견 및 **계획 수정** → **의견 청취 등**을 **재시행** → 불필요한 **절차 지연** 발생

4. (3단계) 주민 등의 의견 청취(법 제7조)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의 공고(법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특구** 지정 신청시 **계획 주요 내용**을 그 지자체의 **공보** 또는 **신문**(인터넷 게재 포함)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법 제7조제1항)

-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5조제1항)

* 공고 및 열람기간 등 법정사항 반드시 준수

- 공고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영 제5조제2항)

나. 공청회 개최(법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7조제1항)

- **공청회 개최시**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영 제5조제3항)

① 공청회의 개최 목적
②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③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④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법 제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지정 신청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7조제2항)

※ **상기 절차(가~다)**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5. (필요시) 특화사업자의 지정 신청(법 제8조)

○ **공고된 지역특화특구 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역특화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 (법 제8조제1항)

○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여 **통보**(법 제8조제2항)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시 제출서류(규칙 제2조제1·2항)>

① 신청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함)
②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④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필수 첨부>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 (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3) 신청지방자치단체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규칙 제2조제3항)

<특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

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② 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③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 결정시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규칙 제2조제4항),

- **특화사업자 지정 결정** 시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해야 함(규칙 제2조제4항)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시 포함사항>

①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주소
②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특화사업의 내용
④ 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4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법 제5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및 **신청서**를 중기부 장관에 제출(법 제5조제1항),

* **(특구명칭)**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법)' 등과 구분 필요(법 제22조)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후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법 제5조제3항),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의견이 있을시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기부 장관**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법 제5조제4항, 영 제3조제3항)

○ **중기부 장관**은 필요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보완** 및 **추가 제출 요청 가능**(영 제3조제2항)

○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영 제7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영 제7조제1항)

**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기간, 부처협의시 연장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영 제7조제2항)

- 그 결과를 해당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영 제7조제1항)

7. (5단계)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0 · 11조)

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1조)

○ **중기부 장관**은 접수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의 **규제특례 사항**과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함(법 제11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부 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영 제7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가능(영 제7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규제특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함**(영 제7조제4항)

【규제특례 반영 제외사유】

①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③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모법(母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할 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영 제7조제5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법 제10조)

○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을 포함될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함께 제출(법 제10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①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④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⑤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⑥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⑧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⑪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⑫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⑬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⑭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⑯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8. (6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회(법 제12조)

○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회** 개최(영 제12조)

* 실무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관련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16명으로 구성

【실무위원회 검토사항】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
②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필요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무위원회 검토의견**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출

9. (7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심의 · 의결(법 제11 · 12 · 13조)

○ **중기부 장관**은 **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및 특구 지정**(법 제11·12·13조)

【위원회 심의 · 의결시 고려사항】

①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②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③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④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⑤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⑦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⑧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4조)>

①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②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③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④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⑤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⑥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 **참석** 및 **발언**하게 할 수 있음(영 제10조)

10. (8단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고시(법 제11조)

○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 포함)하고, 해당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함(법 제11조제2항)

*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 관보고시 내용 (영 제7조제6항) 】

①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③ 특화사업의 내용
④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⑦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⑧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⑨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통지**를 받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1조제3항)

Ⅲ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 지정해제 절차

1. (경우1)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중대사항) 및 지정해제(법 제16조)

○ (지자체 신청)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시 **법 제5조부터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함(법 제16조제1항)

*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특구계획의 제안),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 다만, 계획변경*시 **취소·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않거나, **법 제62~65조의 특례(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 등)**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8조의 절차 **생략 가능**(법 제16조제1항)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역특화특구 계획의 보완 및 추가시에도 동일(규정 제12조)

[법 제62조~제65조]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한 경우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경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경우

1.「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 경우

1.「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중기부 직권) **지역특화특구** 관련 ▲운영상황조사 결과,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계획변경·지정해제**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6개월**의 **기간**을 주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신청**하게 할 수 있음(규정 제6조제1항)

【 지역특화특구위원회 의결로 변경 · 해제하는 경우(중기부 직권) 】

①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②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③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⑥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5조제2항)>

①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② 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 상기사항 외에 지자체장에 대한 계획변경·지정해제 신청 조치가 가능한 경우(규정 제6조제1항) >

①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는 경우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문실시**(특화사업자 및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를 하여야 함(법 제141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법 제16조제2항제6호)는 제외

2. (경우2)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경미사항) 변경 신청(법 제16조)

○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여 ▲대통령령 및 운영·관리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법 제16조제2항),

- 중기부 장관의 결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15조제1항) 】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②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③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지역특구 운영·관리규정 제6조제2항)

<특화사업 세부계획 변경 내용(규정 제6조제2항)>

①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②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외)
③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 제외)
④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⑤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3.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효과(법 제17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로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되면,

① 해당 특례와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효력을 상실 (법 제17조제1항)

② 규제특례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6개월 내에 규제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7조제2항, 영 제16조제1항)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6개월 내**에 **규제특례**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으로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 및 **철거**하여야 함
(법 제17조제3항, 영 제16조제2항)

- 다만,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영 제16조제3항)

【 변경·철거 곤란 및 실익이 없는 경우 】

①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 관할 시·군·구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영 제16조제4항)

Ⅳ 지역특화특구 선정·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1. 특화사업의 선정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관련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실태·수요조사**, 지역내 타특구와의 **특화사업 중복 여부** 검토, **지역기반 산업**을 감안한 기획 등 필요

○ 지역내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특화사업**을 **초기**에는 **소규모**로 **실행 가능성** 있게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초기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및 사업 실패비용의 최소화 가능

2. 규제특례의 선택

○ **특화사업**의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기존 규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규제특례 적용**으로 **각종 정책적 비용**(예산, 시간, 인력 등) **절감**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가능한 총 규제특례(59개 법률, 129개 특례) 중 지역내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

3. 재원 조달

○ **특화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 및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특화사업 성공**의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수익성** 높은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함

○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자체 대상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 추진 필요

○ 관할 지자체의 **핵심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 → **지방의회 예산 심사**시 **설득** 용이

4. 사후 관리

○ **지역특화특구별**로 **자율평가단**(관계공무원, 특화사업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특화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실시

- **건전한 운영**으로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보고서 제출**(매년 1~3월) 및 **평가**에 따른 **우수특구** 선정 등 대비

- **총사업비**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집행실적(누적) 이상**으로 **향후 집행계획** 재설정 **필수 → 변경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시 반영

* 예시1) '21~'24년간 누적 실적 150억원 / 계획 100억원 → 계획변경시 '21~'27년간 총사업비 170억원 설정(누적 실적 150억원 이하로 계획 설정 불가)

** 예시2) '26년도('25년 실적) 운영성과보고서 제출시 단년도('25년) 집행계획 및 실적이 총사업비('22~'26년) 계획 보다 클 수 없음 → 사전 계획변경 필요

○ **특화사업** 중 **기업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매출, 고용, 기업유치 등)

○ **특화사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상시점검**하여 **적기**에 **보완대책** 수립

* 민원(부동산문제, 환경 등) 발생 소지, 당초계획에 부합한 재원조달 여부 등을 상시 점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후**에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필요

* 지역연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하여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마케팅 등 추진

5.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실효적 성과** 창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등이 가능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전**에 **중기부**와 **적극적 사전협의**(컨설팅) 필요

- 사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판단**하에 신청시 **자료보완, 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적·시간적 낭비** 초래 가능

-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용역**의 경우, **발주 전**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6.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시 조례 제정(법 제18조)

○ **지역특화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특화특구**의 **운영, 특화사업 시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음(법 제18조제1항)

- 해당 조례들은 「**지역특구법**」의 **목적** 및 **내용**,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과 **부합**하여야 함(법 제18조제2항)

- 이 경우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18조제3항)

7.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법 제20조의2, 규칙 제2조의2, 규정 제7조의2)

○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특화특구**에 관한 아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지역협의회 운영**시, **▲관할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원**에 **포함**하고,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중기부**에게 **제출**해야 함

【 지역협의회 협의 사항(법 제20조의2제1항) 】

①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②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③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④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⑤ 지역특구법 제25조에 따른 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의2)]

① 지역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관할 시·군·구 장이나 시·도지사로 함
② 위원의 구성
  -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 임기 : 2년으로 연임 가능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⑤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차지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지역협의회 운영시 준수사항(규정 제7조의2)]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역협의회 위원에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할 것

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상황 조사

1. 목적

○ **지역특화특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직권 계획변경·지정해제 대상 여부**(법 제16조제2항) 등을 **현장점검**으로 **확인**(연 1회 이상)

* 근거 : 지역특구법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 운영·관리 규정 제3조(특구운영 상황 조사)

2. 주요 내용

○ **방 법** : 조사대상 특구의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속운영**(계획변경 등) 및 **지정해제** 여부 결정

계획 수립	→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	→	조사결과 통보	→	위원회 보고
본부		본부·지방청·민간위원		본부→지자체		본부(필요시)

[지역특구 운영상황 조사 내용(법 제16조제2항 각호)]

① 지자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②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③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⑥ 지정 및 계획변경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⑦ 특화사업 시행기간 또는 특구 지정기간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 **후속조치** : **지역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 가능

* 중기부 직권 지정해제·계획변경 전에 해당 지자체가 자진하여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기간 부여 가능(운영·관리 규정 제6조)

Ⅵ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 **목 적** : 지역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07~)

□ **근 거** : 지역특구법 제24조 (특구운영의 평가),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 **평가 대상** : 전체 특구(직전연도 신규지정 특구 제외)

□ **평가 체계**

○ (1차 평가) 특례 활용 및 일자리·매출 중심의 **계량 평가**

○ (2차 평가) 특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 **전문가 평가**

○ (3차 평가) 지역 발전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등 국민 관점의 **대국민 평가**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절차 >

1차 평가(4-6월)	→	2차 평가(7-8월)	→	3차 발표(9-10월)
정량지표 (매출·고용 등)		정성평가		정성지표 (성과·효과)
평가전문기관		전문가 평가위원		국민평가단
전체 특구		상위 40개 특구		상위 9개 및 순위 결정

□ **환 류** : 우수특구는 기관·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1점, 총리상 2점, 장관상 6점, 개인표창) 및 홍보·마케팅, 중기부 사업 우선 연계, 부진특구는 관보 고시 및 개선 방안 마련

Ⅶ 참 고

참고1 관련 규정(법령 및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의)**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7. 20., 2024. 7. 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		

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		

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2. 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관광진흥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④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주소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①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	

	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8. 6.>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1조(수당)**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	

	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	

	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		

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4.>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30.>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조례의 제정)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		

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		

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7.]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①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 ② 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2.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3.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	

	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학·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1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출입국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	

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내용·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	

화특구의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2. 29.]	**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2. 17.>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2. 17.]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7., 2023. 10. 31.>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		

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 10. 31.> 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개정 2023.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개정 2023. 10. 31.>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 4.>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목개정 2022. 1. 4.]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개정 2020. 12. 22.>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생략)		
제4장 보칙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①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14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143조(과태료)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4. 20., 2024. 2. 6.>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2. 6.>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25.4.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특구계획"이란 특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특화특구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제3조(특화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① 장관은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특화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화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화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① 장관은 법 제23조와 규칙 제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이하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가내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영 제17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 및 법 제2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특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화특구위원회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소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화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화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

5.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조제1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 조치) ①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화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화특구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역별 특화특구 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특화특구의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정해제 등과 관련한 사전컨설팅 및 교육
2. 지역별·기업별 특성에 따른 신규 규제특례 등 정책수요 발굴
3. 특화특구 운영상황 현장점검(반기별 1회 이상) 및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4. 그 외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역협의회 위원에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3장 포상금의 운영·관리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특화특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가 전년도보다 하향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사용 등) 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화특구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디자인·포장 개발
3. 특화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 옥외 광고탑 설치,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언론기관이나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상품 해외사절단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화특구 관련 행사 주관·후원
5. 특화특구 관련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6. 특화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화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특화특구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특화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이 신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제10조(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장관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포상금으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특화특구지정 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화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미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사본을 특화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특화특구계획의 처리 절차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된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에게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는 특화특구계획에 보완·추가되는 특례조치 등의 사항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②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신청된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적용예정 규제특례 소관 규제법령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제14조(재정지원정책 권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이름
2. 소관 특화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 내용(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모 또는 재정지원 심사 시 해당 특화특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3. 소관 특화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5. 기타 소관 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보조·설명자료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의 심의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특화특구위원회 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전문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은 특화특구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화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한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자</td><td colspan="2">①지방자치단체명</td><td></td><td>②공동신청여부</td><td></td></tr>
<tr><td colspan="2">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td><td></td><td>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td><td></td></tr>
<tr><td colspan="2">⑤공청회 개최일</td><td></td><td>⑥특화사업자 지정일</td><td></td></tr>
<tr><td colspan="2">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td><td></td><td>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td><td></td></tr>
<tr><td rowspan="10">특화특구계획</td><td colspan="2">⑨특화특구 명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특화특구 위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특화특구 면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⑫대외적 표시방법</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⑬특화 사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⑮특화사업자</td><td colspan="3">성명 :
주소 :</td></tr>
<tr><td rowspan="3">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td><td>일반적인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토이이용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권한이양 특 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td><td colspan="3"></td></tr>
</tabl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 · 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

③ 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화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화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 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 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⑩ 특화특구 위치

특화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 ○○리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번지 외 필지

⑪ 특화특구 면적

특화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화특구의 총 면적을 ㎡ 또는 ㎢ 단위로 기재

⑫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화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⑬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화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⑮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⑯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제28조부터 제71조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⑰ 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⑱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화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

1. 특화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화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부를 제출
2. 규제특례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특화특구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

<table>
<tr><td colspan="2">지방청명</td><td>00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00시 · 도</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3">00특구(00시) / 00특구(00군)</td></tr>
<tr><td rowspan="6">현
장
점
검</td><td>참석자</td><td>(중기부)
(지자체)
(그 외)</td><td>대상 특구</td><td>00특구(00시)</td></tr>
<tr><td>일 시</td><td>00월 00일</td><td>장 소</td><td>00시 · 군 · 구청</td></tr>
<tr><td rowspan="4">점
검
결
과</td><td>취지 및 계획</td><td colspan="3"></td></tr>
<tr><td>운영의
적절성 · 효과성</td><td colspan="3"></td></tr>
<tr><td>법령 위반 및
부작용</td><td colspan="3"></td></tr>
<tr><td>지자체 운영
의지 · 노력</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10">간
담
회</td><td rowspan="8">참석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특구 명칭</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일 시</td><td>0월 0일</td><td>장 소</td><td>00청 회의실</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수
렴
의
견</td><td>신규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그 외 정책수요</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td></tr>
</table>

지역협의회 운영 내역

<table>
<tr><td colspan="2">지자체명</td><td>00시청 · 도청
00시 · 군 · 구청</td><td>관할 지역</td><td>00시 · 도
00시 · 군 · 구</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3">00특구(00시), 00특구(00군)</td></tr>
<tr><td colspan="2">협의회 명칭</td><td colspan="3">00위원회 혹은 00협의회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설치된 경우에만 기재 (규칙 제2조의2제8항)</td></tr>
<tr><td colspan="2" rowspan="10">지역협의회 구성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비 고</td></tr>
<tr><td>00</td><td>00</td><td>00</td><td>위원장</td></tr>
<tr><td></td><td></td><td></td><td>위 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회의 개최</td><td>참석자</td><td colspan="3">000 등 총 00인</td></tr>
<tr><td>일 시</td><td>0월 0일</td><td>장 소</td><td>00 회의실</td></tr>
<tr><td>논의 의제</td><td colspan="3">※ 법령상 지역협의회 협의사항(법 제20조의2)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부서) (직위) (성명)</td></tr>
</table>

참고2 지형도면 작성 기준

□ **(개요)** '지역특구법'에 따른 **지역특화특구 신규지정·계획변경**시 제출토록 규정된 **지형도면·지적도** 관련 세부사항 안내

< 관련 근거(지역특구법) >

지역특구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법적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 계획서 내 **지형도면**은 ①**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형도**를 활용, ②**축적 1 : 500~1,500*****으로 **작성**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지구등 데이터베이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음,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 단,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6,000 가능

○ **신규지정·계획변경**(중대, 경미)*시 **제출 중**인 **지형도면**이 **규정상 규격**과 **다를 경우, 특구 지정**에 **문제 제기** 가능**

* 지정해제는 지형도면 고시대상에 미해당(지역특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제출 불필요
** 지적이 배제된 지형도나, 대축척으로 작성한 도면은 토지 이용규제 투명화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적 효력발생의 하자요인이 될 수 있음(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잘못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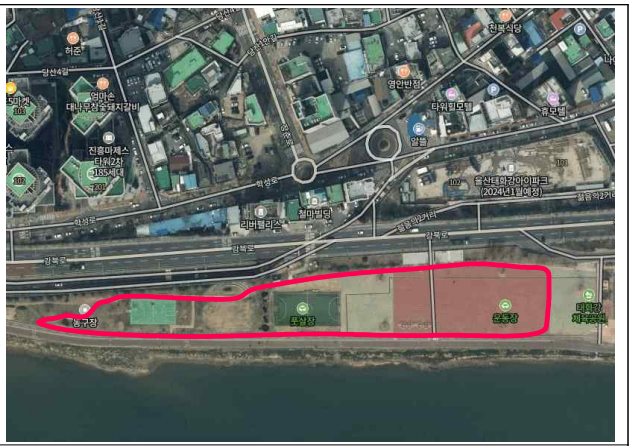
▲규정 지형도 사용X, ▲규정보다 큰 축적	단순 위치도

□ 안내사항(준수 필요)

① 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중대, 경미)시 **규격 지형도면 제출 필수**
→**미제출**시 **위원회 상정**(신규지정, 중대변경), **중기부 승인**(경미변경) **불가**

- 특히, ①기존 신규지정·계획변경시 **규격 지형도면**이 **없었으나** ②**면적 변경**이 없는 **경미변경***시에도 **규격 지형도면 제출 필요**(행정행위 하자의 사후치유)

* ▲특화특구 명칭 변경, ▲특화사업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 성명·주소의 변경

② **특구 지정면적**이 넓어 1:1,500 축적*으로도 **1장**에 **모든 구역**을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 → **여러 장**의 **도면** 첨부 필요

*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000

- 아울러, **2장 이상**의 **도면**인 경우, **열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 총괄도**(축적 1:5,000~50,000) **첨부 가능**(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

< 올바른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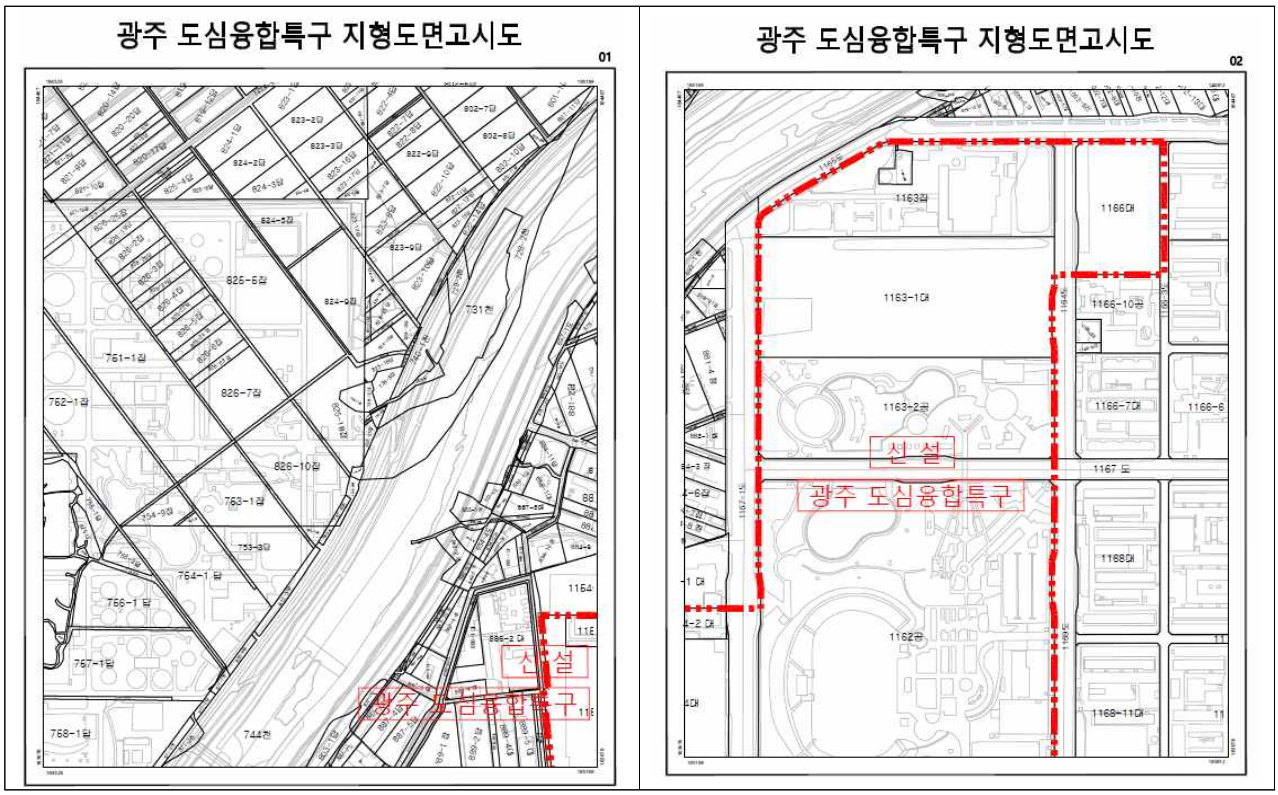

참고3 규제특례 활용사례

[목 록]

Ⅰ.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및 활용사례 ····· 121

1.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제28조) ····· 121

[1] 시립·군립·구립 학교설립 특례

[2] 학교설립 기준에 대한 특례

[3]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4] 시·군·구 설립학교의 학교 인정 특례

2.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29조) ····· 125

[5] 시·군·구 설립학교의 교원 신분·임용 특례

3.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30조) ····· 126

[6]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 특례

[7] 특구 내 자율학교 지정 특례

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1조) ····· 131

[8]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특례

[9]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특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2조) ····· 137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특화사업 추진 특례

6.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33조) ····· 140

[11]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4조) ····· 142

[12]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13]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또는 제한 사항 특례

8.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145

[14] 농업기반시설 폐지 특례

[15]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특례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특례

[17] 한계농지 등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

9.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36조) ····· 149
18 농지 위탁경영 특례
19 농지 임대 및 사용 특례
20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특례
21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특례
22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7조) ····· 156
23 임도 설치 특례

11.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8조) ····· 157
24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9조) ····· 159
25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특례
26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특례
27 국유림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1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166
28 지방도매시장 개설 특례

14.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41조) ····· 167
29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 약사 특례

15.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42조) ····· 168
30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3조) ····· 170
31 분묘개장 통보기간 단축 특례
32 분묘개장 공고에 관한 특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4조) ····· 174
33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시 의견수렴 의제 특례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제 특례
35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
36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특례

18.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5조) ····· 185
37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6조) ····· 186
38 도시공원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39 도시자연공원 행위 허가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40 녹지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7조) ····· 193
41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 195
42 공동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공동행위 허용 특례

2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49조) ····· 197
43~47 국유·공유·폐교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

23.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0조) ····· 210
48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51조) ····· 214
49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고용 특례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52조) ····· 218
50~51 농산물 및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 심사 특례

2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53조) ····· 221
52 종자업의 시설등록 기준 특례
53 종자업자의 종자관리사 공동 관리 특례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4조) ····· 225
54 지자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임대료 특례
55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특례

28.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55조) ····· 227
56 특허출원 우선 심사에 대한 특례

2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56조) ····· 229
57 대기환경기술인(또는 수질환경기술인) 임명에 관한 특례

30.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57조) ····· 231
58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특례

31. 「주택법」에 관한 특례(제58조) ····· 229
59 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특례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9조) ····· 238
60 특구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

3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0조) ····· 240
61 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34.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제61조) ····· 241
62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Ⅱ. 토지이용 규제특례 사항 및 활용사례 ····· 242

35.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64조) ····· 242

63~6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

70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지정 의제 특례

71~72 관광지 등 지정 의제 특례

73 유치지역 지정 의제 특례

74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특례

75 물류단지 지정 의제 특례

76 산업단지 지정 의제 특례

7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특례

78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해제 특례

79~80 특구계획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의제 및 특화사업자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의제

36. 허가등의 의제(제65조) ····· 261

81 초지 전용허가 특례

8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

83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특례

84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에 대한 특례

85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대한 특례

86 입목벌채 등의 신고에 대한 특례

87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

88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한 특례

89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대한 특례

90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9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특례

92 하천공사의 허가에 대한 특례

93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

94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

9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특례

96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대한 특례

97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협의.승인에 대한 특례

98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특례

99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

10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특례

101 도로노선의 변경.폐지 승인에 대한 특례

10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에 대한 특례

103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특례

104 사도(私道) 개설 허가에 관한 특례

105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106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특례

107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특례

108 행정재산 사용 허가 특례
109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특례
110 일반수도사업 인가 특례
111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특례
112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허가 특례
113 사방지에서 벌채 등의 허가 특례
114 사방지 지정 해제 특례
115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특례
116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특례

Ⅲ. 권한이양특례 사항 및 활용사례 ····· 326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 326
117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서 승인 특례
118 체육시설업 등록 특례

38.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7조) ····· 330
119 가축의 도살·처리 특례
120 집유업·축산물가공업 허가 특례

39.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68조) ····· 334
121 식품의 표시기준 특례
12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특례

40.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9조) ····· 337
123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41.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제70조) ····· 339
124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운영 특례
125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격 특례

42. 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제71조) ····· 341
126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특례
127 에너지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과태료 특례
12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특례
129 농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특례

Ⅰ.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1.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1 시립·군립·구립 학교설립 특례 〔법 제28조 제1항〕

○ **원법(原法) :** 「초·중등 교육법」 제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만 가능

- **(특례)**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시·군·구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같은 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 기준에 대한 특례 (법 제28조 제2항)

○ **원법(原法) :**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학교 설립기준은 '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학교는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개별)로 정한다.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③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④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3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 제3항〕

○ **원법(原法)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4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법령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원·배치 기준 충족 필요
- **(특례)** 교원의 배치기준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고, 교사정원의 1/3을 산학겸임교사로 대치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군·구 설립학교의 학교 인정 특례 (법 제28조 제4항)

○ **원법(原法)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공립학교는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시립·도립학교만 인정

- **(특례)** 특구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시·군·구립학교도 학교로 인정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구학교
5. 각종학교

2.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5 시·군·구 설립학교의 교원 신분·임용 특례

○ **원법(原法)**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8항 및 제3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규정, ②교장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그 밖의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이 설립한 공립 초·중등학교의 ①교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의제, ②교장 등 교원을 특구관할 지자체장이 임용

* 단,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같은 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3. 「초 ·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⑥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 특례 〔법 제30조 제1항〕

○ **원법(原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중등·초등·특수학교 별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특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 가능

* **(외국인 교원)**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 해당자,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 자
(외국인 강사) 외국인 교원 요건 해당자,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 **활용사례(구미 글로벌교육특구)**

- '거점 초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여 외국어 전문교육 원어민 강사를 임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7 특구 내 자율학교 지정 특례 (법 제30조 제2항)

○ **원법(原法)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할교육감은 7종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

* ①학습부진아 교육실시학교, ②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학교, ③학생의 창의력 개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 ④특성화중학교, ⑤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⑥농어촌학교, ⑦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특례)** 자율학교 종류 추가 : ①특수목적고등학교*, ②시·군·구립 공립학교

* 과학계열 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같은 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지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같은 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같은 법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같은 법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4. 삭제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9. 삭제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⑧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특례 〔법 제31조 제1항〕

○ **원법(原法) :** 「출입국관리법」 제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시에는 신청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음

*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추천서를 발급하도록 함

* 추천서 발급기준은 중기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활용사례(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 '영주 영어체험센터'의 원어민 강사 채용시 특례를 적용하여 사증발급신청 절차를 진행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특례 〔법 제31조 제1항〕

○ **원법(原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 예시) 회화지도(E-2) : 2년

- **(특례)** 특구사업에 필요한 외국인의 장기간 고용을 위해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기간을 「지역특구법」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예시) 회화지도(E-2) : 2년 → 3년, 특정활동(E-7) : 3년 → 5년

○ **활용사례(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 '영주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외국인 강사의 체류기간에 특례 적용(2년 → 3년)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 원법(原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같은 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4.>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재임기간	구직(D-10)	6개월
공무(A-2)	공무수행기간	교수(E-1)	5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회화지도(E-2)	2년
		연구(E-3)	5년
문화예술(D-1)	2년	기술지도(E-4)	5년
유학(D-2)	2년	전문직업(E-5)	5년
기술연수(D-3)	2년	예술흥행(E-6)	2년
일반연수(D-4)	2년	특정활동(E-7)	3년
		계절근로(E-8)	5개월
취재(D-5)	2년	비전문취업(E-9)	3년
종교(D-6)	2년	선원취업(E-10)	3년
주재(D-7)	3년	방문동거(F-1)	2년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거주(F-2)	5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3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결혼이민(F-6)	3년
		기타(G-1)	1년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무역경영(D-9)	2년	방문취업(H-2)	3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계절근로(E-8)는 제외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특화사업 추진 특례

○ **원법(原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제1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계행정기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특례)**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봄

* 특례적용 위치, 면적 및 경계, 건축물의 높이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

○ **활용사례(화천 평화·생태특구)**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삭도 및 관측소, DMZ 평화안보파크, 생태 관찰학습원 등의 조성 시에 특례를 적용 →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인정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특례)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같은 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 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⑪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

○ **원법(原法) :** 「도로교통법」 제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험방지·교통안전·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를 요구할 수 있고, 시·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활용사례(영주 힐링특구)**

-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차량통행 제한을 위해 특례 적용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7.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⑫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법 제34조 제1항〕

○ **원법(原法)** :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 설치 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정함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방법, 기간 등

-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 설치 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특화사업 홍보용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

<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

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또는 제한 사항 특례 (법 제34조 제2항)

○ **원법(原法) :** 「옥외광고물법」 제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는 미관유지·공공복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 특화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⑭ 농업기반시설 폐지 특례 (법 제35조 제1항)

○ **원법(原法)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령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가능

  * ①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②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 특화사업을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가능

○ **활용사례(영양 고추산업특구)**

- 특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15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특례 〔법 제35조 제2항〕

○ **원법(原法) :** 「농어촌정비법」 제6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생활환경정비 사업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 변경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승인(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중 대상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 관련 내용 고시 및 일반인 열람 → 시·도지사 또는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특례 (법 제35조 제3항)

○ **원법(原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대한 특례)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 한계농지 등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 (법 제35조 제4항)

○ **원법(原法) :** 「농어촌정비법」 제9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의 시설 설치 가능

*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잉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특례)** 4가지 외에도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가능

○ **활용사례(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 특례를 적용하여 한계농지에 독서 관련 시설을 설치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대한 특례)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9.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⑱ 농지 위탁경영 특례 〔법 제36조 제1항〕

○ **원법(原法) :** 「농지법」 제9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의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등의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농지를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활용사례(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 특례에 따라 친환경 조(粗) 사료 생산단지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⑲ 농지 임대 및 사용 특례 (법 제36조 제2항)

○ **원법(原法) :** 「농지법」 제2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농지를 임대·사용대 가능

  * 질병,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됨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농지의 임대, 사용대(使用貸) 허용

○ **활용사례(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 특례에 따라 친환경 조(粗) 사료 생산단지 농지의 임대를 허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⑳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특례 (법 제36조 제3항)

○ **원법(原法) :** 「농지법」 제3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는 법령에 규정된 시설*만 설치

  *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어업인 주택, 국방·군사시설 등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설치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모법(母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모법(母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모법(母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21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특례 (법 제36조 제4항)

○ **원법(原法) :** 「농지법」 제36조 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법령상 4가지 경우*에만 허가

  * ①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설치, ②현장 사무소 및 부대시설 등 설치, 물건 적치 및 매설, ③토석과 광물 채굴, ④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 **(특례)**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제정 가능

○ **활용사례(기장 미역·다시마특구)**

- 해조류제품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22 농지전용허가 제한 특례 (법 제36조 제5항)

○ 원법(原法) :「농지법」 제3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림부 장관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제한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농업진흥·농지보전 저해 우려 시설로 사용시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가능

○ 활용사례(청송 사과특구)

- 과채주스 가공공장 설치를 위해 청송군수가 특구 내 농지 전용 허가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10. 「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 (법 제37조)

㉓ 임도 설치 특례

○ **원법(原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음

*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이 사전에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

- **(특례)** 특구관할 지차제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설치 후 산림청장에게 통보 가능

* 중기부장관이 특구계획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산림청장이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실시

○ **활용사례(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 정선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을 위해 정선군수가 임도를 설치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1.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㉔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

○ **원법(原法)** : 「산지관리법」 제1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

- **(특례)** 특화사업 관련 관광휴양시설, 스키장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특구법」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동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구관할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함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2. 「국유림법」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㉕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특례 〔법 제39조 제1항〕

○ **원법(原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등 법정사유 해당시에만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 가능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 **활용사례(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 산림청장이 국유림 일부(관광시설 설치용)를 고흥군수에게 매각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 원법(原法) 조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같은 법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㉖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특례 〔법 제39조 제2항〕

○ **원법(原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은 법정사유시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가능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 **활용사례(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 산림청장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 일부를 정선군수에게 대부
(주막 1동 설치, 100m^2 규모)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 원법(原法) 조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설비(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풍력 설비"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없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 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 설비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고시된 국유림: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㉗ 국유림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법 제39조 제3항)

○ **원법(原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유림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국유림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

○ **활용사례(장성 편백힐링특구)**

-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인 '편백치유센터' 설치를 허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 원법(原法) 조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농안법」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㉘ 지방도매시장 개설 특례

○ **원법(原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도매시장 개설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 가능하나,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화특구 관할 시·군(구는 제외)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지방도매시장 개설 가능

○ **활용사례(영광 굴비산업특구)**

-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굴비 도매시장을 개설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약사법」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㉙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 약사 특례

○ **원법(原法) :** 「약사법」 제45조 제5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한약도매상은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도매상 자신이 약사 등인 경우 제외

- **(특례)** 한약관련 특구에는 참여하는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인 경우, 1명의 관리약사 등이 한약도매상 10명을 관리할 수 있음

○ **활용사례(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 10인 이하 한약도매상들이 공동으로 한약업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 원법(原法) 조문 >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15. 「의료법」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㉚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원법(原法) :** 「의료법」 제49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법상 부대사업만 할 수 있음

- **(특례)**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부대사업 외에 추가로 부대사업(6종*)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보양온천 설치·운영, ▲사설 화장·봉안시설 설치·관리

○ **활용사례(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허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 원법(原法) 조문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1 분묘개장 통보기간 단축 특례 (법 제43조 제1항)

○ **원법(原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특례)**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완화

○ **활용사례(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 망우산 묘지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묘지 개장 통보 기간 단축(3개월 → 2개월)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분묘개장 공고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제2항]

○ **원법(原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개장의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특례)** 개장의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구관할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활용사례(증평 에듀팜특구)**

-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조성시 특구지역 내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 조례로 달리 정함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17.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㉝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시 의견수렴 의제 특례 (법 제44조 제1항)

○ **원법(原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특례)** 특구계획(도시·군관리계획안 포함)에 대하여 주민, 지방의회 등 의견을 들은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들어야 하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 특구계획(도시·군관리계획안 포함) 관련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것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안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같은 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㉞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제 특례 〔법 제44조 제2항〕

○ **원법(原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되, 일정 조건인 경우는 예외*

< * 예외 경우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토양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특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추가*

*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구토지이용계획에「국계법」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경우

○ **활용사례(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 토지용도변경(생산녹지지역 → 상업지역 등)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㉟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 (법 제44조 제3항)

○ **원법(原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상업지역 90% 이하, 주거·공업지역 7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녹지·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등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계법」 상 용도지역안 건폐율 한도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가능

○ **활용사례(서울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병원 신·증축 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를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로 해당 건폐율의 150%인 75%를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㊱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특례 (법 제44조 제4항)

○ **원법(原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 상업지역 1,500% 이하, 주거지역 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안 용적률 한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가능

○ **활용사례(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병원 신·증축 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대 건폐율 300%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로 해당 건폐율의 150%인 375%를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18.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37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

○ **원법(原法) :** 「도로법」 제61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 연장 및 허가 사항 변경시에도 동일

* 도로관리청 : 고속·일반국도(국토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타의 도로(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함

○ **활용사례(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 강경젓갈축제 시 행사에 필요한 특구 내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문산경찰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공원녹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㊳ 도시공원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 제1항〕

○ **원법(原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목적), 점용허가 기준을 법령에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 대상 및 점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고양 전시문화 특구)**

- 전시참가자 지원 등 특화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함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도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㊴ 도시자연공원 행위 허가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 제2항〕

○ **원법(原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도시공원 내 야외전시회 개최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활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모법(母法)에 따라 허가 등(모법(母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㊵ 녹지 점용기준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 제3항〕

○ **원법(原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목적), 점용허가 기준을 법령에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녹지 점용대상 및 점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도시공원 내 야외전시회 개최를 위해 녹지 점용대상 및 점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활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같은 법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같은 법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0. 「산업입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㊶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

○ **원법(原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

* 국가산단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일반산단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도시첨단산단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농공단지 : 시·군·구별로 100만㎡~200만㎡내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 **(특례)** 특구관할지자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모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

○ **활용사례(의왕 철도특구)**

- 철도관련 기업유치 및 복합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면적과 미분양비율에 관계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1. 「공정거래법」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㊷ 공동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공동행위 허용 특례

○ **원법(原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①일정 목적*으로 ②인가요건에 해당하고 ③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 **(특례)**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해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는 경우,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활용사례(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 녹차가공제품, 녹차나무 신품종 개발 등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의제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내용·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법(原法)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㊸~㊼ 국유 · 공유 · 폐교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

○ **원법(原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유재산, 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사용·수익허가 요건*이 모법령에 규정

* (국유재산 처분)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 등(총 28개)
(공유재산 대부) 대부지자체·공법·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 등(총 28개)
(공유재산 매각)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등(총 33개)
(폐교재산 대부·매각) 교육용·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 시설 등 활용

- **(특례)**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상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활용사례**

㊸ 국유재산(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 국보테마파크 조성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및 대부 또는 매각하여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

㊹~㊺ 공유재산(홍천 청정산양삼특구)

- 특화사업을 위해 홍천군 군유림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도록 함

㊻~㊼ 폐교재산(영월 박물관고을특구)

- 박물관 건립 및 유치시 관내 폐교(7개)를 수의계약으로 특화사업자에게 대부하여 사용토록 함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49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시 외의 지역[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 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

48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 (법 제50조)

○ **원법(原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주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대상·요건·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특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시 특구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되고, 특구관할 지자체는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 소곡주 제조 관련 제조면허를 취득시 서천군수의 추천을 받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2조(「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주세법」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⑤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⑨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같은 법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주세법」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천대상·요건·방법·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

㊾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고용 특례 〔법 제51조〕

○ **원법(原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각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시 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학예사를 고용 및 등록하도록 규정

- **(특례)** 박물관,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

○ **활용사례(영월 박물관고을특구)**

- 박물관 신규건립시 학예사를 공동 배치(4개 박물관당 공동학예사 1명)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㊿ ~ 51 농산물 및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 심사 특례 (법 제52조)

○ **원법(原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하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 관련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활용사례**

㊿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청도 반시나라특구)

- 청도반시 명품브랜드화사업 추진 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 적용

51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 고부가가치 종묘생산 및 특산품 수출육성사업 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52 종자업의 시설등록 기준 특례 (법 제53조제1항)

○ **원법(原法)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종자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별표5) 종자업의 시설기준 : 과수의 묘목포장 규모는 7,000㎡ 이상일 것

- **(특례)**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지역특구법 시행령*」으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 규모는 5,000㎡ 이상

○ **활용사례(경산 종묘산업특구)**

- 종자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수의 육묘포장 시설기준(7,000㎡이상 → 5,000㎡이상)을 완화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6. 27.>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나. 과수

시설	1)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다. 화훼

시설	1) 교배방법의 경우	가)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가) 실험실: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라. 버섯

시설	1) 실험실: 16.5㎡ 이상일 것 2)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	1)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장비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53 종자업자의 종자관리사 공동 관리 특례 (법 제53조제2항)

○ **원법(原法) :**「종자산업법」제37조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특례)**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다른 종자업자(19개 이하)와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활용사례(경산 종묘산업특구)**

- 종묘유통센터의 운영법인인 경산묘목조합에서는 15개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종자관리사 1인을 둠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산업집적법」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㊹ 지자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임대료 특례 (법 제54조제1항)

○ **원법(原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

  *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

- **(특례)**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활용사례(부천 만화영상융합특구)**

- '부천콘텐츠센터' 임대시, 개별법령*의 40%인 10/1,000의 임대료율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1,000의 비율을 적용해야 함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산업집적법」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55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제2항〕

○ **원법(原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천650제곱미터(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8.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56 특허출원 우선 심사에 대한 특례 [법 제55조]

○ **원법(原法)** :「특허법」제6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특허청장은 특정 대상(14종)에 대해서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 **(특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도록 함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해당되지 않음

○ **활용사례(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 '해조류건강바이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 우선 심사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31. 「기업규제완화법」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57 대기환경기술인 · 수질환경기술인 임명에 관한 특례 (법 제56조)

○ **원법(原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3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대기환경·수질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4개 이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환경기술인·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 가능

- **(특례)**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법」 상 관리기관장*은 산업단지 등의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수질환경기술인 임명 가능

* 1. 관리권자(산업부 장관, 지자체장 등),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 **활용사례(충북 태양광특구)**

- 증평·괴산 산업단지의 수질환경기술인과 대기환경기술인을 산단 관리기관장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명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같은 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0. 「건축법」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58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특례 (법 제57조)

○ **원법(原法) :** 「건축법」 제20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례)**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대상으로 함

○ **활용사례(서귀포 휴양·예술특구)**

- '솔동산 문화의 거리' 내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31. 「주택법」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

㊾ 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

○ **원법(原法) :** 「주택법」 제5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함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 **(예외)** 1. 특별시 및 광역시, 2.「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활용사례(의왕 철도특구)**

- '국제철도 연수센터 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종사자를 위해 주택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원법(原法) 조문 >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2. 「토지보상법」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⑥⓪ 특구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법 제59조〕

○ **원법(原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한정

- **(특례)** 특화사업자는 일정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가능

* ▲생산, 연구개발,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 조성,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 설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등

○ **활용사례(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 전북잠업시험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에 특례 적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원법(原法)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같은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61 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

○ **원법(原法)** :「지방재정법」 제3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자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해야 함

- **(특례)**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은「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활용사례(화순 백산산업특구)**

-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로 사업기간 단축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원법(原法) 조문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34.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법 제61조)

㊷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 **원법(原法)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동집배송센터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필요
- **(특례)** 공동집배송센터의 필요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Ⅱ. 제2절 토지이용 규제특례 사항

35.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법 제64조)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애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63~6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1호〕

○ **원법(原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결정의 고시 등

- **(특례)** 특구계획(도시·군관리계획 포함) 승인을 받으면,「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 특구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세부내용 >

63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결정, 64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결정
65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결정, 66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 결정
67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6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결정
69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활용사례(순창 장수과학특구)**

- 고령친화농공단지 조성, 고령친화생활체험관 설립 등을 위한 특구계획 승인(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⑦⓪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2호〕

○ **원법(原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계획(수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계획 포함) 승인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조선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특구 계획의 승인(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포함)으로 해수부 장관에 의한 결정 절차 생략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71~72 관광지 등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2항)

○ **원법(原法)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 **(특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지정을 의제

○ **활용사례(증평 애듀팜특구)**

-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계획(관광지 조성계획 포함) 승인시 관광지 지정을 의제 받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 원법(原法) 조문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73 유치지역*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4호〕

*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원법(原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유치지역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 필요

- **(특례)** 특구계획(유치지역 지정계획 포함) 승인시 유치지역 지정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원법(原法) 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㉞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5호〕

○ **원법(原法) :**「도시개발법」 제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계획(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 포함) 승인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5.「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원법(原法) 조문 >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㉟ 물류단지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6호〕

○ **원법(原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례)** 특구계획(물류단지 지정계획 포함) 승인시 일반물류단지 지정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원법(原法) 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일반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삭제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㊻ 산업단지 지정 의제 특례 〔법 제64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②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③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④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단,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가능

- **(특례)** 특구계획(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승인시 산업단지 지정 의제

  *「지역특구법」 제47조의 면적·미분양 비율 특례를 적용받아 지정하는 산단에 한정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법(原法) 조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7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특례 〔법 제64조제3항제1호〕

○ **원법(原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 전부·일부의 지정 해제 가능
- **(특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증평 에듀팜특구)**

-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특구 계획(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계획 포함) 승인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원법(原法) 조문>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나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해제 특례 〔법 제64조제3항제2호〕

○ **원법(原法) :** 「농지법」 제3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7개)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가능

- **(특례)** 특구계획(농업 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계획 포함) 승인시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이 변경·해제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 등을 위한 특구계획(농업진흥지역·지구 해제 계획 포함) 승인시 농업진흥지역·지구 해제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원법(原法) 조문>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㉙~㉚ 특구계획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의제 및 특화사업자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의제 〔법 제64조제4항〕

○ **원법(原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9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지역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개발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

- **(특례)** 특구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됨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원법(原法) 조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특화특구의 인허가등 의제(법 제65조)

81 초지 전용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호〕

○ **원법(原法) :**「초지법」 제2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초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초지 전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초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특구내 초지의 전용 사항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아 초지 전용허가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원법(原法) 조문 >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2호)

○ **원법(原法) :**「산지관리법」 제1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산지전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 '딸기향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특구내 산지의 전용 사항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아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2호〕

○ **원법(原法) :** 「산지관리법」 제15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특례)** 특구계획(산지전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산지전용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84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2호〕

○ **원법(原法)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광물 채굴, 광해방지사업,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국유림), 시장·군수·구청장(그 외)에게 신고

- **(특례)** 특구계획(산지일시사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5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원법(原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입목 벌채 등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6 입목벌채 등의 신고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원법(原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사유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 필요

- **(특례)** 특구계획(입목 벌채 등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입목벌채 등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⑤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87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원법(原法)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보호구역안에서는 일정 행위*를 하지 못함(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

* 1. 입목(立木)·죽(竹) 벌채, 2. 임산물 굴취(掘取)·채취, 3. 입목죽·임산물의 손상 등 행위, 4. 가축 방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㊽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원법(原法) :**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및 신고 수리시 산림보호구역 內 일정 행위* 가능

< * 허가·신고시 가능 행위 >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산림보호구역 內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원법(原法) 조문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9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4호〕

○ **원법(原法) :**「농지법」 제3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대해 협의해야 함

< * 농지전용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특례)** 특구계획(농지전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 '인삼약초건강체험관' 사업을 위한 특구계획(농지전용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원법(原法) 조문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⑨⓪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5호)

○ **원법(原法) :**「농어촌정비법」제2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허브체험농원의 진·출입로 및 조경시설 등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5호〕

○ **원법(原法) :**「농어촌정비법」 제8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군·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원법(原法)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2 하천공사의 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6호〕

○ **원법(原法) :** 「하천법」 제3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원법(原法) 조문 >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6호)

○ **원법(原法) :**「하천법」 제33조 및 제5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하천시설 점용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하천의 점용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활용사례(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 하천 부지 사용을 위한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원법(原法) 조문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4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에서 특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필요 행위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시흥 오이도선사·해안문화특구)**

-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으로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 원법(原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9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필요 행위(실시계획 승인 要)>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 · 제36조에 따른 협의 · 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 원법(原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㊻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 원법(原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97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협의·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3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국가, 지자체, LH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②국가,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소규모(1천 제곱미터 이하) 매립시 매립면허관청과 협의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 원법(原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㊽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7호〕

○ **원법(原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면 매립면허관청 승인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 원법(原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㊾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8호〕

○ **원법(原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100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8호)

○ **원법(原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되, 이들 외의 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가능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원법(原法)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101 도로노선의 변경·폐지 승인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9호〕

○ **원법(原法) :** 「도로법」 제21조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폐지시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도로 노선 지정·변경·폐지 승인을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도로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0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9호〕

○ **원법(原法) :**「도로법」 제3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의성 마늘산업특구)**

- 특구사업 부지가 국도 5호선과 인접하여 주 진입로 개설이 필요→ 의성군이 진입로 개설 공사 내용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아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03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9호〕

○ **원법(原法) :** 「도로법」 제6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제거, ②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㉞ 사도(私道) 개설 허가에 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0호〕

○ **원법(原法) :** 「사도법」 제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도의 개설·개축·증축·변경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증평 에듀팜특구)**

- 특구 내 사도 개설 내용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아 사도법에 의한 허가·공고 등을 한 것으로 의제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원법(原法) 조문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05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1호)

○ **원법(原法) :**「관광진흥법」 제5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관광단지 등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 조성 등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아,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06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1호〕

○ **원법(原法) :** 「관광진흥법」 제55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①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②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 가능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관광지 등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㉗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2호〕

○ **원법(原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공단지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원법(原法) 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108 행정재산 사용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3호〕

○ **원법(原法) :** 「국유재산법」 제3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①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②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의 종류(「국유재산법」 제6조)>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09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4호〕

○ **원법(原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체육시설업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원법(原法) 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⑩ 일반수도사업 인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5호〕

○ **원법(原法) :** 「수도법」 제1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원법(原法) 조문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인가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5호〕

○ **원법(原法) :** 「수도법」 제49조 및 제5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인가 필요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원법(原法) 조문 >

「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2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6호〕

○ **원법(原法) :**「하수도법」 제16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자체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6.「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하수도법」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13 사방지에서 벌채 등의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7호〕

○ **원법(原法) :** 「사방사업법」 제1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방지에서 ①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②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사방지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원법(原法) 조문 >

「사방사업법」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㉑④ 사방지 지정 해제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7호〕

○ **원법(原法) :** 「사방사업법」 제20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특정한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사방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원법(原法) 조문 >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15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8호〕

○ **원법(原法)**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소하천 등에서 특정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특례)** 특구계획(관련 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소하천 점용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8.「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6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특례 〔법 제65조제1항제19호〕

○ **원법(原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 허가 필요

- **(특례)** 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원법(原法)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한다)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설치·구입 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에 대한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반기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 중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법(母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Ⅲ. 제3절 권한이양 규제특례 사항

37. 「체육시설법」에 관한 특례 (법 제66조)

⑰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특례 (법 제66조제1항)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원법(原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승인 필요
- **(특례)**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 관할 지자체장 승인 필요

○ **활용사례(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 의령 친환경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시 골프장업 사업계획을 의령군수가 승인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㊽ 체육시설업 등록 특례 〔법 제66조제2항〕

○ **원법(原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 등록 가능

  * 골프장업·스키장업의 경우 조건부 등록도 허용(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갖추었을 때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

○ **활용사례(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 특화특구 내 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태백시장이 처리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시행령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38.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67조)

⑪⑨ 가축의 도살·처리 특례 〔법 제67조제1항〕

○ **원법(原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가축의 도살·처리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
- **(특례)** 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음

○ **활용사례(옥천 옻산업특구)**

- 특구 내 농가 등이 사육한 옻·닭·오리 등의 가축을 자가에서 도살하여 소비자에게 조리 및 판매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7조(「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⑫⓪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허가 특례 〔법 제67조제3항〕

○ **원법(原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축산 관련 특구에서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한정)을 하려는 자는 특구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7조(「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 12. 31.>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8. 6. 29.>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9.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68조)

121 식품의 표시기준 특례 〔법 제68조제1항〕

○ **원법(原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식품 등에는 표시 기준(총리령)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활용사례(봉화 파인토피아특구)**

- 특화사업으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봉화군수가 고시 → 제품명에 특구명칭(파인토피아)을 병행하여 표기하고, 봉화군이 제작·공급한 스티커를 사용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특례 〔법 제68조제2항〕

○ **원법(原法) :** 「식품위생법」 제4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 규정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 **활용사례(상주 고랭지포도특구)**

- 상주시장이 특구 내 포도 가공식품 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별도로 실시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8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 원법(原法) 조문 >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0.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69조)

123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 **원법(原法)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토부 장관은 특정한 경우*에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비상사태의 대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

○ **활용사례(영덕 청정에너지특구)**

- 청정에너지 자동차 경주대회 당일, 창포리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이륜차, 삼륜차 등의 운행을 제한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 원법(原法)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1.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70조)

124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운영 특례 (법 제70조제1항)

○ **원법(原法) :** 「노인복지법」 제33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특례)** 특구관할 지자체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5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격 특례 〔법 제70조제2항〕

○ **원법(原法)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노인복지주택 입소 가능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
- **(특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원법(原法) 조문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특화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법 제71조)

126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특례 〔법 제71조제1호〕

○ **원법(原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제3항제1호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 규정 미적용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1조(특화특구내 법령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제3항제1호

< 원법(原法) 조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90조(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27 에너지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과태료 특례 〔법 제71조제2호〕

○ **원법(原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미이수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규정 미적용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1조(특화특구내 법령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1호

< 원법(原法) 조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5조(교육)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특례 (법 제71조제3호)

○ **원법(原法)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신고·허가, 변경신고 규정 미적용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1조(특화특구내 법령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

< 원법(原法) 조문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29 농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특례 〔법 제71조제4호〕

○ **원법(原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표준규격품(수산물 한정)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활용사례 :** 없음

<지역특구법 특례 조문>

법 제71조(특화특구내 법령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 원법(原法) 조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참고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신청자	①지방자치단체명	0000	②공동신청여부	×
	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2000.12.01 ~ 12.14	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	2000.12.01 ~ 12.14
	⑤공청회 개최일	2000. 12. 14	⑥특화사업자 지정일	2005. 07. 05
	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	2000. 12. 22	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	해 당 없 음

특화특구계획	⑨특화특구 명칭		000000000 특구
	⑩특화특구 위치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⑪특화특구 면적		000,000㎡
	⑫대외적 표시방법		000000000 특구
	⑬특화 사업		000, 000, 000 등 5개 사업
	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		2022년~2026년
	⑮특화사업자		0000
	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해당없음
		권한이양 특 례	해당없음
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
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작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

③ 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화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 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화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⑩ 특화특구 위치
특화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 ○○○도 ○○군 ○○면 ○○리·○○리 ○○번지 외 필지

⑪ 특화특구 면적
특화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화특구의 총 면적을 ㎡ 또는 ㎢ 단위로 기재

⑫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화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⑬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화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⑮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⑯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제28조부터 제71조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⑰ 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⑱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화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

1. 특화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화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부를 제출
2. 규제특례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특화특구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

별첨 **지역특화발전 지정 특구계획 작성 예**

< 000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구의 개요

가. 특구 명칭

나. 특구 위치

- 특구위치 및 특화사업 분포도(지형도 포함)

다. 특구 면적

- 특화사업별(생산기반사업, 관련센터 및 운영현황, 상품화사업 등) 구분 작성

특화사업	위치	필지수	면적(㎡)

라.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특구 명칭과 동일하여도 무방

마. 특구 지정기간

2.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추진배경 및 목적

나. 특구지역 여건 분석 * 국제, 전국 대비 비중 포함

(1) 지리적 여건 (기상 및 기후여건, 교통, 자연환경 등)

(2) 산업 여건 (일반현황, 인구추이, 산업현황, 관광자원 현황 등)

(3) 교육 또는 의료·복지 여건 (일반현황, 인구추이, 교육현황, 의료복지시설 현황 등)

* 교육특구인 경우, 학교 · 도서관 · 교육관련 예산 및 행정현황 등

다. 특구(해당 업종 또는 품목) 특성 및 생산기반 현황

* 관련 중소·벤처기업 현황, 실태 반드시 포함

라. 특구지정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2) 경제적 필요성

마.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1) 정책적 효과

(2) 경제적 효과

【 작성해야할 내용 예시 】

o 국내외 민간기업 유치, 민자투자 규모, 의미, 내용 등
o 규제특례 활용 효과
o 중소·벤처기업 고용, 투자유치, 시군 입주 등 성과
o 글로벌 유망기관과 MOU체결, 국제행사 유치 등
⇒ 반드시 정량 효과 표시(생산, 고용, 매출, 소득 등)

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설정 지역지구 설정 여부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가. 특화사업

(1) 특화사업 개요

(2) 특화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세부사업, 사업기간, 규모 등)

나. 특화사업자(지자체/공공/민간 구분)

(1) 성명

(2) 주소

4. 특구 토지이용계획

** 동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제특례사항

가. 특구계획의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범위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 규제 특례				
토지 이용 특례				
권한 이양 특례				

**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
** 각 특례에 대한 필요성, 특례 적용의 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6. 연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가. 연도별 집행계획

연도별 / 사업별		사업기간	재원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12	'13	'14	'15	'16
총 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지역특화사업(1)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지역특화사업(2)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나. 재원조달방법

(1) 국비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소 관 부 처	회계명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12	'13	'14	'15	'16
총 계			계									
특화사업	소계		소계									
	세부사업		소계									

(2) 지방비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지자체	회계명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12	'13	'14	'15	'16
총계			계									
			도비									
			군비									
특화사업	소계		소계									
			도비									
			군비									
	세부사업		소계									
			도비									
			군비									

(3) 민자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특 화 사업자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12	'13	'14	'15	'16
총계			계								
특화사업	소계		소계								
	세부사업		소계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8.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9.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10. 기타 필요 첨부서류

가.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 법 제13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 령 제14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라. 법 제62조, 제63조 및 영 제36조·제37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참고5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신청서

<table>
<tr><th colspan="6">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예시)</th></tr>
<tr><td rowspan="4">신청자</td><td colspan="2">①지방자치단체명</td><td>0000</td><td>②공동신청여부</td><td>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③특구계획안 주요 내용 공고기간</td><td>2000.12.01 ~ 12.14</td><td>④특구 계획안 열람 기간</td><td>2017.12.01 ~ 12.14</td></tr>
<tr><td colspan="2">⑤공청회 개최일</td><td>2000. 12. 14</td><td>⑥특화사업자 지정일</td><td>2005. 07. 05</td></tr>
<tr><td colspan="2">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td><td>2000. 12. 22</td><td>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일</td><td>해 당 없 음</td></tr>
<tr><td rowspan="9">특구계획</td><td colspan="2">⑨특구 명칭</td><td colspan="3">000000000 특구 (변경없음)</td></tr>
<tr><td colspan="2">⑩특구 위치</td><td colspan="3">00000000000000000000</td></tr>
<tr><td colspan="2">⑪특구 면적</td><td colspan="3">• (당초) 236,294㎡ ⇒ (변경) 940,599㎡(증 704,305㎡)</td></tr>
<tr><td colspan="2">⑫대외적 표시방법</td><td colspan="3">0000000000000000000</td></tr>
<tr><td colspan="2">⑬특화사업</td><td colspan="3">• (당초) 9개사업 ⇒ (변경) 16개사업(완료 8, 계속 1, 신규 7)</td></tr>
<tr><td colspan="2">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td><td colspan="3">• (당초) 2005년~2020년 ⇒ (변경) 2005년~2022년(3년 연장)</td></tr>
<tr><td colspan="2">⑮특화사업자</td><td colspan="3">• 0000 (변경없음)</td></tr>
<tr><td rowspan="3">⑯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td><td>일반적인 규제특례</td><td colspan="3"><(당초) 4개 특례 ⇒ (변경) 5개 특례>
•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9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삭제> 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변경> 법 제36조의5(「농지법」에 관한 특례)
• <변경> 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td></tr>
<tr><td>토지이용 규제특례</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r><td>권한이양특례</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r><td colspan="3">⑰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td><td colspan="3">• (당초)사업기간 : 2005년~2020년 ⇒ (변경) 2005년~2022년 (2년 연장)
• (당초)사 업 비 : 651.1억원 ⇒ (변경) 936.1억원 (증 285.0억원)
• (당초)특화사업 : 9개사업 ⇒ (변경) 16개사업 (완료 8, 계속 1, 신규 7)</td></tr>
<tr><td colspan="3">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able>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6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일

신청자 0000 0000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목 차

제 1 장 특구의 개요

1. 특구의 명칭 ····· 0
2. 특구의 위치 ····· 0
3. 특구의 면적 ····· 0
4.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0
5. 특화사업자 ····· 0

제 2 장 특구의 지정 지역여건

1. 일반 현황 ····· 0
2. 해양환경 현황 ····· 0

제 3 장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특구 비전 및 목표 ····· 0
2. 특구지정 신청 배경 및 목적 ····· 0
3. 특구지정 필요성 ····· 0
4. 특구 SWOT 분석 ····· 0
5. 기대효과 ····· 0

제 4 장 특화사업 추진계획

1. 특화사업 종합 ····· 0

2. 특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 0

제 5 장

규제특례사항

1. 규제특례사항 ····· 0
2. 특구법 제00조「000법」에 관한 특례 ····· 0
3. 특구법 제00조「000법」에 관한 특례 ····· 0
4. 특구법 제00조「000법」에 관한 특례 ····· 0

제 6 장

특구 토지 이용계획

1. 특구 토지 이용계획 ····· 0

제 7 장

재원조달 계획

1. 추진사업별 집행계획 ····· 0
2. 연차별 투자계획 ····· 0
3. 재원조달 방안 ····· 0
4. 특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 0

제 8 장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방안

제8장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방안 ····· 0

제 9장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0

제10장

첨부자료

1. 특구계획 주민공청회 ····· 0

2.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 0

3. 편입부지 필지현황 ····· 0

4. 편입부지 필지조서 ····· 0

참고6 지역특화발전특구 해제 신청서

지역특화발전특구 해제 신청서(예시)

신청자	① 지방자치단체명		000	② 공동신청여부	-
	③ 특구계획(해제)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2019. 07. 02 ~ 2019. 07. 21	④ 특구계획(해제)안 열람기간	2019. 07. 02 ~ 2019. 07. 21
	⑤ 공청회 개최일		2019. 07. 12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2019. 4. 20.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2019. 04. 01	⑧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	-
특구계획	⑨ 특구 명칭		· 00000000000 특구		
	⑩ 특구 위치		·		
	⑪ 특구 면적		·		
	⑫ 대외적 표시방법		·		
	⑬ 특화 사업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⑮ 특화사업자		성명 : 주소 :		
	⑯ 규제특례를 해제하고자 하는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 산림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7조)		
		토이이용 규제특례	·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구법 제39조)		
		권한이양 특 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특구법 제41조)		
⑰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 특구 지정해제 신청(관련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6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2000년 0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0000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목 차

제 1 장 특구 지정 현황

1. 특구 개요 ····· 1
2. 특구의 지정목적 ····· 2
3. 특화 사업 ····· 2
4. 재원 조달 ····· 4
5. 규제특례사항 ····· 4

제 2 장 특구 지정 해제(안)

1. 특구 해제 신청사유 ····· 5
2. 특구 추진경과 ····· 6
3. 특구 운영성과 ····· 7
4. 재원조달 실적 ····· 10
5. 규제특례 활용실적 ····· 11
6. 특구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 ····· 12

제 3 장 특구 해제에 필요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 13

2. 특구 해제안 공고 ····· 14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16

4. 지방의회 의견정취 결과 ····· 24

참고7 시·도별 지역특화특구 지정 현황('25.5월 기준)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지정 신청·검토	관계행정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특구위원회	특구지정 고시
신청서 검토 (필요시 보완)	규제특례 적용검토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추가 협의	특구지정 심의·의결	특구지정 관보고시 및 통보
지자체→중기부	중기부↔관련부처	중기부↔관련부처	특구위원회	중기부→지자체 등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 현재 175개 특구*(138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5.5.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28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3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 정	15	9	5	3	3	2	3	22	15	19	20	18	43	28	20	3	228
해 제	5	3	-	1	-	1	-	2	2	3	4	5	13	7	6	1	53
운영 중	10	6	5	2	3	1	3	20	13	16	16	13	30	21	14	2	175